

인천광역시의회 공고 제2015 - 71호

『인천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11월 5일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인천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의 공회전 허용시간은 2005년 조례제정 당시의 자동차 제작기술을 반영하여 규정한 것으로 그동안 자동차 제작기술이 발전하여 공회전 허용시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 자동차 공회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출가스로부터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자동차공회전 제한 대상 지역에 포함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어문 규정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등에 대한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2조)
-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에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포함하여 규정함(안 제3조)
- 공회전 제한지역에서의 공회전 허용시간을 5분에서 3분으로 단축하고, 대기 온도가 영상 25℃ 이상이거나 영상 5℃ 미만인 경우 제한시간을 5분 이내로 하며, 0℃ 미만이거나 영상 30℃를 초과할 경우에는 자동차공회전 제한시간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 11. 16(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참조 : 산업경제전문위원실 전화 440-6235, 팩스 440-87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붙임자료

가. 조례안 1부

나.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다. 비용추계서 1부.

**인천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인천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병건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62
----------	-----

발의연월일: 2015. 10. 29.
발의자 : 공병건 · 임정빈 ·
조계자 · 박승희 ·
박영애 · 황홍구 ·
이한구 · 안영수
의원 (찬성자 3명)

□ 제안이유

- 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의 공회전 허용시간은 2005년 조례제정 당시의 자동차 제작기술을 반영하여 규정한 것으로 그동안 자동차 제작기술이 발전하여 공회전 허용시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 자동차 공회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출가스로부터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자동차공회전 제한 대상 지역에 포함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어문 규정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등에 대한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2조)

-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에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포함하여 규정함(안 제3조)
- 공회전 제한지역에서의 공회전 허용시간을 5분에서 3분으로 단축하고, 대기 온도가 영상 25℃ 이상이거나 영상 5℃ 미만인 경우 제한시간을 5분 이내로 하며, 0℃ 미만이거나 영상 30℃를 초과할 경우에는 자동차공회전 제한시간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안 제4조)

☐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인천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대기환경보전법(이하“법”이라 한다)”을 “「대기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본문 중 “법 제2조제13호”를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공회전”란”을 ““공회전”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터미널”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을 말한다.

5. “차고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등록에 필요한 보유차고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의 등

록에 필요한 보유차고

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영차고지

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차고지

6. "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상·노외주차장을 말한다.

7. "자동차극장"이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야외영화상영관을 말한다.

8.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이란 「학교보건법」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역을 말한다.

9. "다중이용시설"이란 공연장, 경기장, 공원 등 공공시설 및 백화점, 대형할인매장, 관광호텔, 종합병원 등 다중이 이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대기오염 및 연료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을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주차장

4. 자동차극장

제3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제3조제1항제5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중이용시설

제3조제1항제6호가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4조제1항 중 “따라 제한지역에서 5분”을 “따른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3분”으로, “아니된다”를 “아니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기 온도가 영상 5℃ 미만이거나 영상 25℃ 이상일 경우에는 공회전 허용시간을 5분 이내로 한다. 다만, 대기 온도가 0℃ 미만이거나 영상 30℃를 초과할 경우에는 공회전 제한시간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5조제1호 중 “제2조제20호”를 “제2조제22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호를 제4호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모자 또는 완장 등을 착용”을 “공무원증을 패용”으로 한다.

제9조 중 “자동차운전자가 법 제94조제5항제5호를 위반하였을 때에는”을 “자동차운전자에게 법 제94조제5항제5호에 따라”로 한다.

제1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3조에 따른 공회전 제한지역의 지정 및 표지판 설치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u> 제59조에 따라 터미널·차고지·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자동차의 공회전을 제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대기환경보전법</u> 」 -----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u>정의</u> 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u>뜻</u> 은 ----- -.
1. "자동차"란 <u>법 제2조제13호</u> 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1. ----- 「 <u>대기환경보전법</u> 」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3. " <u>공회전</u> "란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 또는 정차하는 상태를 말한다.	3. " <u>공회전</u> "이란 ----- ----- -----.
<신설>	4. "터미널"이란 「 <u>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u> 」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과 「 <u>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u> 」 제2조제2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을 말한다.
<신설>	5. "차고지"란 다음 각 목의 어

<신 설>

<신 설>

<신 설>

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등록에 필요한 보유차고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에 필요한 보유차고

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영차고지

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차고지

6. "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상·노외주차장을 말한다.

7. "자동차극장"이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야외영화상영관을 말한다.

8.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이란 「학교보건법」 제5조에서

<u><신 설></u> 제3조(제한지역 지정 등) ① <u>공회전을 제한하는 지역(이하 "제한지역"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u> 1. 터미널 가. <u>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u> 나. <u>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물류터미널</u> 2. 차고지 가. <u>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시내버스·마을버스·전세버스·일반택시의 차고지 및 같은법 제29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차고지</u> 나. <u>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u>	<u>규정하고 있는 구역을 말한다.</u> 9. <u>"다중이용시설"이란 공연장, 경기장, 공원 등 공공시설 및 백화점, 대형할인매장, 관광호텔, 종합병원 등 다중이 이용하는 건물을 말한다.</u> 제3조(제한지역 지정 등) ① <u>시장은 대기오염 및 연료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을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u> 1. ----- <u><삭 제></u> <u><삭 제></u> 2. ----- <u><삭 제></u> <u><삭 제></u>
--	--

조제9호에 따른 공영차고지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일반화물자
동차의 차고지

3.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상주차장

4. 영화진흥법시행규칙 제8조의
3에 따른 자동차극장

5. 다중이용시설 등의 주차장
가. 문학경기장, 송의경기장
나. 인천대공원, 월미공원

6. 그 밖에 인천광역시(이하 "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가. 시내버스 회차지

나. 노외주차장

다. 백화점·관광호텔·종합병
원 등 대형건물의 부설주차
장

라. 기타 다중이용시설 주차장

② (생략)

제4조(제한시간) 자동차운전자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제한지역에
서 5분을 초과하여 공회전을 하
여서는 아니된다.

<신 설>

3. 주차장

4. 자동차극장

5.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삭 제>

<삭 제>

6. 다중이용시설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제한시간) ①-----
----- 따른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3분-----
-----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

제5조(적용대상) 공회전을 제한하는 자동차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경찰용자동차·소방자동차·구급자동차 등 실무활동 중인 긴급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 2. 3. (생략) 4. <u>대기의 온도가 영상 27℃를 초과하거나 영상 5℃ 미만인 경우로서 냉·난방을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u> 5. (생략) 제6조(단속공무원) ① (생략) ② 단속공무원은 <u>모자 또는 완</u>	<u>기 온도가 영상 5℃ 미만이거나 영상 25℃ 이상일 경우에는 공회전 허용시간을 5분 이내로 한다. 다만, 대기 온도가 0℃ 미만이거나 영상 30℃를 초과할 경우에는 공회전 제한시간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u> 제5조(적용대상) ----- ----- -----. ----- -----. 1. ----- 제2조제22호----- ----- ----- ----- 2. 3. (현행과 같음) <u><삭 제></u> 4. (현행 제5호와 같음) 제6조(단속공무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공무원증을
---	---

<u>장 등을 착용</u>하여 누구나 쉽게 당해 공무원이 단속공무원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측정용 시계·온도계·비디오 등 공회전 단속에 필요한 장비를 휴대하여야 한다. 제9조(과태료 부과·징수) 시장은 제4조를 위반한 <u>자동차운전자</u>가 법 제94조제5항제5호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제10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권한을 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제3조제1항제6호의 <u>규정에 의한 공회전 제한지역의 지정</u> 2. ~ 4. (생략)	<u>폐용</u>----- ----- ----- ----- ----- -----. 제9조(과태료 부과·징수) ----- ----- <u>자동차운전자</u>에게 법 제94조제5항제5호에 따라 ----- -----. 제10조(권한의 위임) ----- ----- -----. 1. 제3조에 따른 공회전 제한지역의 지정 및 표지판 설치 2. ~ 4. (현행과 같음)
---	--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련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 제59조(공회전의 제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2조(정의) ○ 제5조(면허 등의 기준) ○ 제29조(등록기준)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 주차장법 ○ 제2조(정의) ☐ 학교보건법 ○ 제5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설정)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제5조(차고지의 설치 등) “세부내용 별지 작성”
관련조례 정비대상	
관련자료	

관련법령 발췌사항

□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공회전의 제한) ① 시·도지사는 자동차의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및 연료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하거나 정차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여객자동차터미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가 아닌 곳으로서 승합자동차를 정류(停留)시키거나 여객을 승하차(乘下車)시키기 위하여 제36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과 장소를 말하며, 그 종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가. 도로의 노면(路面)

나. 그 밖에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장소

제5조(면허 등의 기준)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이 해당 노선이나 사업구역의 수송 수요와 수송력 공급에 적합할 것

2. 최저 면허기준 대수(臺數), 보유 차고 면적, 부대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최저 등록기준 대수, 보유 차고 면적, 부대시설, 수송력 공급계획의 수립·공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등록기준)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자동차 대수, 보유 차고 면적, 영업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물류터미널"이란 화물의 집화(集貨)·하역(荷役) 및 이와 관련된 분류·포장·보관·가공·조립 또는 통관 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가공·조립 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것이어야 한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공영차고지"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제공되는 차고지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설치한 것을 말한다.

□ 주차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 가.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 나. 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 다. 부설주차장: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 학교보건법

제5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설정) ①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학교 경계선이나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를 넘을 수 없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차고지의 설치 등)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는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차고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차고지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그 차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차고지 설치에 관한 확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차고지 설치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차고지 설치 확인서를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비용 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 예상되는 비용이 년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이 경우

3. 미첨부 사유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못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관련 자료 제시)

인천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비용을 수반하지 않는 개정안으로 미첨부

4. 작성자

환경녹지국 대기보전과장 과장 김학근